

「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4월 4일

나. 발 의 자: 정지원·김근한·김낙관·김영태·김재우·김정도·박교상·박세채·
소진혁·이명희·이정희·장미경 의원(12명)

다. 회부일자: 2023년 4월 4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4월 13일

제26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정 지 원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 2에 의하여 구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9조)
-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포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2,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의2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기 타: 해당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조례안은

-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수렴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제출됨.

○ 검토 결과,

-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5조의 2,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조문에 의하여 정책과정에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를 촉진토록 되었음.
-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서울 등 11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, 경기도에서도 4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음.
-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고, 타지자체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민주시민 육성 도모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